



화평 전기 유한공사 VS 쯔우원지에 등 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 분쟁 사건

33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저장성 항주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0)浙杭知终字第8号
판결 일자	2010년 3월 12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1. 항주 화평 전기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쯔우원지에, 2. 닝보시 쟡퉁마이쓰 전기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53조,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 제2조		
영업비밀	고객정보 및 판매정보		
키워드 (Keyword)	경업제한(竞业限制), 비밀보안규정(保密规定), 입증책임(举证责任), 상업비밀의 내용(商业秘密的内容)		

02 사건 개요

원심 피고 쯔우원지에는 2004년 8월 19일부터 2009년 3월 2일까지 원심 원고 항주 화평 전기 유한공사(이하 ‘화평공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양 당사자 간에 2005년 2월 25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의 내용에는 비밀보호 규정 및 경업제한 약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쯔우원지에는 2009년 5월 22일 원심 피고 쟡퉁 마이쓰 공사(이하 ‘마이쓰공사’)를 설립하고, 20만 위엔을 투자하여 8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마이쓰 공사는 여러 번 화평공사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다.

원심 원고 화평공사는 원심 피고들에 대해 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어디에도 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와 판매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정보가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화평공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원심 피고(피상소인)

화평공사의 고객정보와 판매정보는 상업 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고객정보와 판매정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고객정보와 판매정보가 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가 없다.

원심 피고들이 물건을 화평공사의 고객들에게 팔았다는 증거가 없다.

04 판결 요지

화평공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경영정보 및 그 내용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화평공사가 주장하는 경영정보의 구체적 내용 및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들이 주장하는 고객자료 등 경영정보가 상업비밀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또한, 원심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업비밀을 분명히 특정하여야 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이와 같은 침해대상의 특정 및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